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 9. 27 선고 2022가단50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재

담당변호사 도정환, 최진영

변 론 종 결 2022. 8. 30.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에 관하여 2020. 5. 19.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1,982,681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82,6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내용 등

- 1) D은 2011. 6. 22. E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 F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원을 대출받아 그 원리금을 변제해 왔는데, 그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E 주식회사는 2013.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게 D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3. 9. 4. 'D은 E 주식회사에게 3,183,861원 및 그 중 3,006,274원에 대하여는 2013.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2013차전5455,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0. 22. 확정되었다.
- 2)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은 G 주식회사를 거쳐 2021. 1. 22. 원고가 이를 양수하였는데, G 주식회사는 2015. 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양수인으로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2015. 4. 16. 그에 따라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D 측에게 송달되었다.2) 3) 이후 G 주식회사는 2021. 7. 20. 위 채권 양도 사실에 관하여 양도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채권양도통지서를 공시송달할 것을 명하는 인용 결정(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카기424)을 받았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다시 2021. 9. 8.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2021. 10. 27. 그에 따라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D에게 공시송달 형태로 송달 처리되었다.
- 4)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2022. 1. 20. 기준 11,982,681원(= 원금 3,006,274원 + 이자 8,976,407원)이 남아 있다.

나. 상속재산 분할협의 내용과 D의 재산 상태 등

- 1)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20. 1. 7. 사망하자 배우자인 피고와 그들의 자녀들인 D, I, J은 2020. 5.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5. 22. 접수 제58256호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은 위 1)항 기재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에 대한 가액은 40,888,888원³⁾ 정도였다.

3) 한편, 2022. 2.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K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와 D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D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는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이 D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3)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D이 이 사건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각 양도 사실을 통지받은 사실이 없기에 결국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배치될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승계집행문 부여 절차에 비추어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또한 피고는,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와 망인이 함께 모은 재산으로 마련한 것이나 편의상 망인에게 피고 지분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후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에게 사해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4)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소결론(원상회복의 방법)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때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은 ‘사실심 변론 종결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으므로, 이 경우 원물반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 2/9를 피고의 소유로 하는 부분의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상회복의 범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의 가액을 40,888,888원 정도로 추인할 경우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채권액 11,982,681원은 위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982,6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순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서구 외 2필지 동 제 7 층 호[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서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119.21 m^2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서구 대 25364.4 m^2 2. 대구광역시 서구 대 20612.7 m^2 3. 대구광역시 서구 대 27925.4 m^2

대지권의종류 : 1,2,3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73902.5분의 60.24

- 1) 주문 제1항의 경우 원고 측이 2022. 7. 12.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에 따른다.
- 2) 참고로 이후 G 주식회사는 2016. 1. 21. 또다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부여된 승계집행문은 공시송달 형태로 D에게 송달 처리되었다.
- 3) 위 분할 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당시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여 계산된 금액이다.
- 4) 참고로 피고 측은 2022. 8. 30. 변론종결 시점까지 관련 주장 사항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다.